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의의 및 우리의 고려사항

1998. 8

최 의 철
(북한인권센터 소장)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ICC 창설의 의의	2
III. ICC 창설 배경	4
IV. ICC 재판권의 주요내용과 대외관계	5
1. ICC의 재판권	5
2. 검사의 역할	7
3. ICC와 개별 국가간의 관계	8
4. ICC와 UN 안보리와의 관계	9
5. 기타	9
V. 주요쟁점과 문제점	11
1. 범죄에 대한 개념규정과 ICC의 역할	11
2. ICC 운영의 문제점	12
3. ICC 발전 전망	13
VI. ICC와 인권신장	15
VII. 고려사항	16

I. 문제제기

- 세계화와 민주화의 국제적 조류에 힘입어 人權問題는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창설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人權保護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 향후 ICC 활동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상이 계속될 것이나, ICC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II. ICC 창설의 의의

○ 세계 161개국 대표들은 7월 17일 ICC 창설 협약안을 찬성120, 반대7, 기권21표로 통과시키고, 18일 유엔 전권대표회의에서 채택된 多者間協約案에 서명하기로 하였음.

- 반대한 국가는 미국,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예멘, 중국과 이스라엘임
- 적극 지지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등임
- 북한 불참

○ ICC는 최소 60개국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2000년에 설치하고, 장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두기로 결정하였음.

○ ICC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및 침략행위 등을 위반한 개인을 재판할 수 있는 최초의 常設 裁判所임.

-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룰 뿐 개인범죄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
- 특히 전범에 대해서는 1945년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전범재판소를 비롯해 1993년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된 적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한시적이었음.

- ICC의 창설은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비인도적 범죄인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와 합의를 천명한 것임.
- 따라서 ICC 창설은 人權伸張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ICC 창설은 국제법 발전 및 세계차원의 사법체계 구축에 중요한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Ⅲ. ICC 창설 배경

- ICC의 創設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ICC 설립규칙을 전문가들에게 위촉·검토하게 하였음.

- UN총회는 1951년 19개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ICC 설립 초안을 작성하고, 1953년부터 수정 작업을 하였으나 1989년까지 진전이 없었음.

- 냉전이후 1992년 UN총회는 ICC 설립에 대한 ILC 보고서를 토의하고, 1994년 ILC는 종합적인 設立案을 UN총회에 제출하였음.
 - 특히 유고와 르완다 사건이 ICC 설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

- 1995년 UN총회는 ICC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안 마련을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는 바, 이 준비위원회가 1998년 로마회의에 最終案을 제출함.

IV. ICC 재판권의 주요내용*과 대외관계

1. ICC의 재판권

○원칙적으로 ICC가 해당 국가의 동의없이 刑事犯의 기소가 가능하나, 개별국가가 형사범 기소의 우선적 권리를 행사함.

- ICC의 재판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 원칙과 보완적이며 제한적 기능 수행

○ICC의 裁判權은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만을 다루고 있음(제5조). ICC가 규정한 범죄는 다음과 같음.

- 집단살해죄(Genocide)
-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 전쟁범죄(War Crimes)
- 침략행위(Aggression)
- 단 침략행위는 향후 상세한 규정을 마련

○集團殺害(제6조)는 민족(national), 종족(ethnic), 인종(racial)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하려는 행위임.

* ICC규정은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1998.7)”에 근거함.

- 집단구성원의 살해 및 집단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침해
-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집단의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침해
- 집단의 출산을 금지시키려는 목적으로 강요된 조치
-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

○人道에 반하는 죄(제7조)는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로서

- 살인(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
- 말살(인구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식량과 의료품 제공 거부)
- 노예화(여성이나 어린이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간을 소유하는 권리와 권리행사)
- 인구의 강제이동 및 추방
- 투옥 및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 고문
- 강간, 성노예, 매춘강요,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성폭력
- 국제법에서 용인되지 않는 집단 학대 및 정치, 인종, 민족, 소수민족, 문화, 종교 및 성별(남녀) 집단의 기본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심각한 침해

- 제5조에 규정된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행사(제13조)는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함.
 - 해당 국가가 범죄 사실의 개연성을 검사에 통보
 - UN 안보리가 범죄 사실의 개연성을 검사에 통보
 - 검사가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

2. 검사의 역할

- ICC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檢事의 獨自權(Proprio motu)을 부여함.
 - 이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CC의 정치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절차상으로 보완(제42, 제46조)
 - 유고나 르완다에서도 검사의 독자권을 부여
- 검사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자기 의지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검사는 접수된 정보에 근거해서 국가, UN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조직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사가 조사에 착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필요 자료를 첨부하여 Pretrial Chamber(사전심리 판사위원회)에 조사

권을 요구함(제15조).

○검찰부는 ICC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제42조).

3. ICC와 개별 국가간의 관계

○ICC가 규정한 형사범 처벌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재판소의 책임이나, ICC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제17조).

- 개별 국가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 개별 국가가 조사를 연기하거나 심리 과정에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
- 개별 국가의 사법제도의 붕괴 및 사법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個別國家는 ICC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제86조).

- ICC가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조사·기소에 국가는 전적으로 협조
- ICC 미가입국이라도 특별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ICC의 요구에 협조

- ICC는 정보, 문건 및 피의자 인도 등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각국에 요구(제89조)
- 개별국가는 ICC의 결정과 판결을 자국의 판결과 같이 수용할 의무

○재판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공개가 國家安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는 재판과정에 개입하여 검사와 협력하여 자료제공을 협의할 수 있으나, 국가는 정보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제72, 73조).

4. ICC와 UN 안보리와의 관계

○ICC는 독립기구이나 UN과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고, ICC의 諸法規는 UN헌장의 규정과 위배되지 않아야 함(제5조).

○UN 安保理는 검사에게 범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3조), 국가가 ICC의 협조 요청에 불응할 때 ICC는 안보리에 이 사실을 통보함(제87조).

5. 기타

○소급 처벌은 금지되고(제11조), 형량은 30년 이하이며 중대한 범

죄행위는 중신형에 처할 수 있음(제77조).

○ICC의 공식용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임
재판 과정에서의 상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임.

V. 주요쟁점과 문제점

1. 범죄에 대한 개념규정과 ICC의 역할

-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인들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ICC의 裁判權을 제한하는 데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ICC 법규는 이미 국제사회가 제정한 집단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범위를 확대·강화
- 侵略行爲(Aggression)의 내용 규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침략행위의 규정에 대한 절대 다수국 간의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ICC의 재판권을 확대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침략행위는 채택할 경우 규정의 애매성으로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
 -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침략행위가 채택될 경우 UN 안보리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
- ICC의 재판관할권에 마약범, 테러범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많은 국가들은 이에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들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비밀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이에 반대함.

○ICC 창설에 반대한 美國은 유일 강대국으로 군사우위를 견지하려는 정책과 관련, ICC의 재판권 및 검사의 역할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ICC의 효과적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검사의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자국시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
- 전쟁범죄에서 군사령관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
- 만일 걸프전 당시 ICC가 존재했었다면 이라크는 이라크내 미군을 기소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미국은 미국시민이나 미군들을 ICC 재판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소면제 조항 삽입을 계속 주장
- 제시 홀름즈(Jesse Holms) 미 상원의원은 ICC 비준안이 “상원에 상정되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언급

2. ICC 운영의 문제점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를 결정하고, ICC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음. 안보리의 정치적 결정에 ICC가 어느 정도 司法的 獨立과 신뢰도를 견지할 수 있을지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UN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요구됨.

- 미국이 재판권 및 검사의 역할 증대를 견제하려는 노력은 ICC의 효과적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ICC의 협조요청에 국가가 불복한 경우, UN 안보리에 넘긴다는 규정외에 특별한 強制執行權이 없음. 따라서 ICC에 증거 문서와 증인 및 피고인의 체포, 이송에 관한 보다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ICC 운영을 위한 재정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ICC 운영기금의 財源은
 - 참여국 기부
 - UN 안보리의 사건 의뢰시 UN에서 경비 제공
 - 기타 정부, 국제기구, 개인 회사들로부터 현금
- ICC 재판권 행사와 관련, 형사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정확성 및 합의성에 의해서 미비한 범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2. ICC 발전 전망

- ICC의 공식출범을 200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별국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어 출범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 미국 등 일부국가들은 현 규정의 수정을 계속 주장
- 예민한 인권사안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신중한 반응

○ICC의 권위와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가입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그러나 미국은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자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ICC의 가입을 유보할 것임.

○그러나 UN 회원국의 절대다수가 ICC 설립에 찬성하고 있어 미국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2000년 이후에라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국제법 질서의 옹호자로 유고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 설치에 주동적 역할 수행.
- 미국의 국내여론은 미국의 반대에 비판적

○ICC가 출범되고 마약범, 테러범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ICC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차원의 사법기구로 발전될 것임.

VI. ICC와 인권신장

- ICC의 재판관할권 및 범규에 있어서 참여국들간에 의견 대립이 있으나, ICC는 비인도적 범죄를 재판할 최초의 상설재판소로서 범죄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의 事前豫防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임.

- ICC는 집단살해 및 인도에 반한죄를 개인적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어, 향후 국제질서에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전쟁을 도발한 정치지도자 처벌 가능
 - 전쟁이나 내전의 경우에도 국제법규에 어긋난 살상행위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

- ICC의 창설은 북한, 중국 등 인권기록이 좋지 않은 국가들에게 자국의 인권개선을 유도하는 국제적 압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ICC의 기능이 순조롭게 작동될 경우, 국제사회가 제정한 諸人權 규약들의 효력은 강화될 것임.

VII. 고려사항

- 정부는 ICC의 加入 批准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정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중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정당성 확보
 - 민주질서의 확립에 기여

- 北韓人權 개선을 위한 ICC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고의로 빚어진 아사,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가혹행위 등은 ICC의 형사처벌 대상

- ICC의 설립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기구(300여개) 및 민간조직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을 감안, 국내 인권 NGOs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민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 ICC 등 국제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 배양

- 통일부도 이산가족 재회 등 남북인권 현안을 전담하는 법률 분야 전문가를 확보·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민통연은 북한인권센터가 전담

- 한국내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사무소 설치도 적극 고려.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 외 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 외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대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의의 및 우리의 고려사항

統一情勢分析 98-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북한인권센터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901-2528(代), FAX:901-2542

印刷處 정선기획인쇄사 전화:268-9933

印刷日 1998년 8월 일

發行日 1998년 8월 일
